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32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이학영 · 김주영 · 박 정
한민수 · 김태선 · 이해민
한정애 · 안호영 · 이재정
조정식 · 황명선 · 김성희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소규모·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경제도는 없는 상황임.

이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제7항 중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을 “사업주의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
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의 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 ⑥ (생략) ⑦ <u>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u>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사업주의 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의 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u> ----- ----- ----- ----- ----- ----- ----- ----- -----.
⑧ ~ ⑬ (생략)	⑧ ~ ⑬ (현행과 같음)